

기간 연장 통지서

피해보상 청구인		생년월일		피접종인과의 관계	
접수일시		당초 결정기간			
연장 사유					
연장 결정기간					
그 밖의 안내사항					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년 월 일

질병관리청장

직인